# 국립부경대학교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 규정

### 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25조의2에 따른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(이하 '도서관운영위원회'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2조(구성)

- ①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은 학무부총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도서관장이 된다.
-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, 학생처장, 기획처장, 사무국장, 입학본부장, 국제교류본부장, 산학협력단장, 정보전산원장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은 단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 이 경우 단과대학별 추천 위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인문사회과학대학, 자연과학대학, 경영대학, 공과대학, 수산과학대학, 환경·해양대학, 정보융합대학 각 1명

#### 제3조(임기)

-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위원이 사고 또는 궐위된 경우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.

#### 제4조(회의)

-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, 정기회의는 매년 2월에 개최한다.
-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개최한다.
-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5조(기능)

도서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대학도서관진흥법 제9조의 대학도서관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- 2.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정책기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3. 대학도서관 예산, 조직, 시설 및 자료에 관한 사항
- 4. 다른 대학교의 대학도서관과 교류·협력에 관한 사항
- 5. 도서관 규정, 세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- 6. 도서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7. 그밖에 대학도서관의 주요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#### 제6조(간사)

- ① 회의의 진행을 위해 간사를 두며, 도서관 학술정보지원실 팀장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-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  - 1. 회의준비, 회의 소집통보
  - 2. 회의자료 작성 및 전달
  - 3. 회의록 작성 및 의결사항 관련 행정처리

## 부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「대학도서관진흥법」과 「국립부경대학교 학칙」(이하 "학칙"이라 한다) 제11조의3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(이하 "도서관"이라 한다)의 발전계획 수립과 진행, 직원의 배치, 학술정보자료의 확보와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임무)

도서관은 대학교육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국내외 각종 정보자료(이하 "자료"라 한다)를 수집, 정리, 보존하여 교직원, 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연구, 학습에 제공함을 임무로 한다.

#### 제2장 조직

#### 제3조(조직)

- ① 학칙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임명된 도서관장(이하 "관장"이라 한다)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② 관장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학칙 제10조의5에 따라 설치된 학술정보지원실에는 팀을 두어 운용하며, 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.

## 제4조(도서관 운영위원회)

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두며,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## 제3장 도서관 발전계획

## 제5조(발전계획의 수립)

- ① 관장은 「대학도서관진흥법」 제8조의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5년마다 발전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 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.
  - 1. 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
  - 2. 도서관 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
  - 3. 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
  - 4.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
  - 5. 도서관 인적 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
  - 6.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연도별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한다.
  - 1. 전년도 연도별계획의 시행 결과
  - 2. 해당 연도의 도서관 발전사업 추진 방향
  - 3. 도서관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

## 제4장 직원의 배치 및 교육

#### 제6조(직원의 배치)

- ① 총장은 도서관에 「대학도서관진홍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사서를 두어야 하고, 필요한 경우 전산직원 등 전문 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② 관장은 대학의 교육·연구 지원을 위한 충분한 사서 및 전문 직원을 확보·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 제7조(교육 훈련)

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 및 전문 직원은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「대학도서관진흥법」에서 제시 한 연간 최소 교육시간 이상의 교육·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.

## 제5장 자료의 수집 및 관리

#### 제8조(자료 구입 예산 및 소장)

- ① 관장은 도서관에 교수 연구와 학생 학습을 위한 충분한 도서관 자료를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다.
- ② 관장은 「대학도서관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도서관 자료기준 기본도서는 학생 1인당 70권 이상, 연간 증가 도서 수는 학생 1인당 2권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 제9조(자료의 구분)

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- 1. 단행본
- 2. 연속간행물
- 3. 참고자료
- 4. 전자자료
- 5. 비도서자료
- 6. 학위논문
- 7. 귀중자료
- 8. 기타자료

#### 제10조(수집자료의 구분)

도서관이 수집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- 1. 구입자료
- 2. 수증자료
- 3. 교환자료
- 4. 편입자료

### 제11조(자료관리의 범위)

도서관이 관리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
- 2. 도서관 자료로서 교내 각 기관에 비치하고 있는 자료

## 제12조(자료의 선정 및 구입)

- ① 자료의 균형적 발전을 기하고 장서의 일관성 있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자료를 선정한다.
  - 1. 교수의 학술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자료
  - 2. 학생의 학습 및 교양에 필요한 자료
  - 3.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
- ② 도서관은 자료의 질, 이용자의 요구,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구입하는 자료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.

### 제13조(자료의 납본)

교내에서 발간되는 자료는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부를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.

## 제14조(자료의 등록 및 정리)

- ① 구입 자료는 등록함을 원칙으로 하고, 수증·교환·편입 자료는 도서관 장서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등록한다.
- ② 도서관에 등록된 자료의 정리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.

#### 제15조(문고설치)

- ①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문고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수증자료의 관리와 기증(기부)자에 대한 예우는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.

## 제16조(자료의 폐기 및 제적)

도서관이 소장한 자료는 「도서관법」에 정한 범위에서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.

## 제6장 시설 및 자료의 이용

#### 제17조(시설에 관한 기준)

관장은 학생 수, 장서 수 등을 고려하여 재학생 1인당 1.2제곱미터 이상의 연면적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.

## 제18조(자격)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범위는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.

- 1. 교직원 및 재학생
- 2. 관장의 허가를 받은 그 밖의 사람

#### 제19조(개관 시간)

도서관의 개관 시간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.

#### 제20조(휴관일)

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관장은 필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
- 1. 자료실: 공휴일, 개교기념일
- 2. 일반열람실: 설날, 추석

#### 제21조(자료대출)

제18조에 규정된 사람은 본인의 신분증으로 대출할 수 있다.

## 제22조(대출책수 및 기간)

- ① 단행본 대출 책 수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전임교원, 겸임교원, 명예교수, 강사: 50책 이내 90일
  - 2. 직원, 조교, 대학원생: 20책 이내 30일
  - 3. 학부생: 10책 이내 14일
- ② 제1항에 명시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전자책 대출 책 수는 5책 이내로 하며, 대출 기간은 5일로 하되, 연구원 및 도서관회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.
- ③ 그 밖의 대출 책 수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.

### 제23조(대출 제한 자료)

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. 다만,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단기간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.

- 1. 연속간행물
- 2. 참고자료
- 3. 학위논문
- 4. 귀중자료
- 5. 비도서자료
- 6. 관장이 지정한 그 밖의 자료

## 제24조(대출기간 중 반납)

- ①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에는 대출받은 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.
  - 1. 휴직, 정직, 전출, 퇴직, 정학, 퇴학, 제적, 수료, 졸업 등
  - 2. 자료의 운용상 필요하여 관장의 요구가 있을 때
- ② 졸업이나 수료 예정자는 학위수여일 30일 전부터 대출이 중지되고, 대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.

#### 제25조(관내수칙)

도서관 이용자는 자료 보존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 자료 또는 물품의 훼손 및 무단 반출
- 2. 신분증을 대여하거나 무단 사용
- 3. 지정된 장소 외에서 식음이나 흡연
- 4. 지정된 장소 외의 게시물 부착
- 5. 인쇄물 및 그 밖의 물품 배포
- 6.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그 밖의 행위

#### 제26조(개인정보 및 인권보호)

관장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.

## 제7장 비치자료

## 제27조(비치 자료)

도서관은 교내 각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비치할 수 있다.

- 1. 교내 각 기관에서 수집하여 등록 및 정리절차를 마친 자료
- 2. 도서관에 2책 이상 소장하는 자료로서 다른 전문분야와 공통되지 아니하는 자료

#### 제28조(비치 절차)

교내 각 기관장이 자료를 비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허가를 얻어 비치할 수 있다.

#### 제29조(관리 및 책임)

- ① 교내 각 기관에 비치한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장이 관리 보관할 책임을 진다.
- ② 비치한 자료는 그 목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, 오손 기타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그 사유를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#### 제30조(비치 자료의 반납)

비치 자료로서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는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, 관장은 관리상 필요에 따라 점검 및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.

#### 제8장 보칙

## 제31조(운영세칙 등)

도서관 우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.

## 제9장 제재

### 제32조(자료대출 중지)

- ① 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면 다른 자료 대출 및 도서관 이용을 중지한다.
- ② 대출 중지 및 면제방법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.

## 제33조(자료의 변상)

- ①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도서관에 신고하고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동일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.
- ② 동일 자료의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 변상방법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.

## 제34조(자료반납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)

관장은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 또는 해당 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- 1. 각종 증명서 발급 보류
- 2. 장학금 지급 및 휴학 등 승인 보류

#### 제35조(질서 위반자에 대한 조치)

- ① 관장은 도서관의 시설과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타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도서관규정 및 세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도서관 이용 중지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다.
- ② 질서유지를 위한 처분기준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.

## 부칙

#### 제1조(시행일)

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"별표 2"의 "수산물리학과", "별표 3", "별표 5"의 융합전공 폐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, "별표 2"의 "에너지융합소재공학과"는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### 제2조(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

이 학칙 시행으로 일반대학원(석사과정 및 박사과정)의 "수산물리학과" 재적생은 "해양생산관리학부 수산 물리학전공" 재적생으로 본다.

## 제3조(글로벌정책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

이 학칙 시행으로 폐지된 "일본학과"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동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.

## 제4조(다른 규정의 개정)

본교 제 규정의 제명 및 내용 중 "부경대학교"는 "국립부경대학교"로 한다.

# 도서관 운영세칙

## 제1조(목적)

이 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출판)

출판에 관한 주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이 저자인 교양과목의 교재는 도서관에서 출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2. 도서관에서 출판하는 도서에 대하여는 인쇄경비를 제외한 판매이익의 100분의 20으로 저자에게 인세로 지급한다.
- 3. 저자의 기증 자료는 10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발행부수에 따라 기증 자료를 조정할 수 있다.
- 4. 도서관에서 출판하는 모든 자료의 저작권은 저자가 소유하고, 출판권은 도서관이 소유한다.

## 제3조(자료의 납본)

규정 제13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자료를 납본하여야 한다.

- 1. 교내 각 기관에서 발간하는 논문집과 간행물 2부
- 2. 석 · 박사학위논문 원문파일 1부

## 제4조(자료의 정리)

규정 제14조에 따라 본교에서 소장하는 모든 장서는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정리하며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별치기호를 부여할 수 있다.

1. 분류표

가. 국내서: KDC6

나. 국외서: DDC23

2. 목록규칙

가. 국내서: KCR4, 통합서지용 KORMARC

나. 국외서: AACR2, MARC21

3. 저자기호표

가. 국내서: 수입순

나. 국외서: 카터의 세자리 저자기호표

#### 제5조(문고설치)

규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문고설치를 할 수 있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개인문고의 설치는 기증도서 등록 권수 5,000이상인 기증자가 개인문고의 설치를 희망할 경우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장이 결정한다.
- 2. 권장도서 등의 도서관 운영 목적에 따라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 주제로 구성된 문고를 설치할 수 있다.
- 3. 문고의 설치기간은 5년 주기로 검토하고 도서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연장 및 폐지할 수 있다.

#### 제6조(기증자 및 기부자 예우)

규정 제15조 제2항 기증(기부)자에 대한 예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기증자료에 본인 동의 후 기증자 표기를 하며, 목록 구축시 기증자명 입력
- 2. 기증자료 5.000권 이상의 기증자에 대한 예우
  - 가. 도서관 홈페이지에 사이버 컬렉션을 설치
  - 나. [별지 제1호 서식] 기증자명패 부착과 [별지 제2호 서식] 감사패 증정
  - 다. 도서관 우대회원 자격 평생 부여
- 3. 기증자료 3.000권 이상의 기증자에 대한 예우
  - 가. 도서관 홈페이지에 사이버 컬렉션을 설치
  - 나. [별지 제2호 서식] 감사패 증정
  - 다. 도서관 우대회원 자격 평생 부여
- 4. 기증자료 1,000권 이상의 기증자, 발전기금 500만원 이상 기부자에 대한 예우
  - 가. [별지 제3호 서식], [별지 제12호 서식] 감사장 증정
  - 나. 도서관 우대회원 자격 평생 부여
- 5. 기증자료 500권 이상의 기증자, 발전기금 100만원 이상 기부자에 대한 예우
  - 가. [별지 제4호 서식]. [별지 제13호 서식] 감사의 편지 송부
  - 나. 도서관 우대회원 자격 10년 부여

## 제7조(자료 폐기 기준 및 범위)

- ① 규정 제16조에 의하여 폐기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파손, 오손, 부식 등 훼손상태가 심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, 원상회복은 가능하나 보수비용
  - 이 구입가격을 상회하는 자료
  - 2.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나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진 자료로서 소장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
  - 3. 대물 변상된 망실 자료
  - 4. 천재지변 그 밖에 준하는 사태로 유실 또는 손상된 자료
  - 5. 자료를 대출한 사람이 사망, 제적 및 퇴학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 폐기 기준은 '장서 폐기 업무 지침'에 의거한다.
- ② 규정 제16조에 의한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제1항 제1호, 제2호에 해당되는 자료 중 유일본이나 희귀본은 해당 분야 전문가 2인 이상의 소견서 (별지 제5호 서식)를 받은 후 폐기한다.

#### 제8조(자료폐기절차)

자료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.

- 1. 폐기자료 목록 작성
- 2. 제7조 제4호 및 제5호는 관련 문서 첨부
- 3. 그 외 구체적인 자료 폐기 절차는 '장서 폐기 업무 지침'에 의거한다.

## 제9조(자료의 폐기 처리)

활용이 불가능한 자료나 이관 또는 교환을 원하는 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매각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폐기하다.

## 제10조(자료의 제적 처리)

폐기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제적 처리하여야 한다.

- 1. 제적 도서원부 작성
- 2. 장서인 우측 변에 "제적"인을 걸쳐 날인
- 3. 데이터 삭제
- 4. 통계 수정

## 제11조(관장의 허가를 받은 그 밖의 사람의 이용자격)

- ① 규정 제18조 제2호 관장의 허가를 받은 그 밖의 사람은 다음과 같다.
  - 1. 본교 휴학생
  - 2. 본교 대학원 수료생
  - 3. 시간제 등록생 및 학점은행제 학습자
  - 4. 수료후연구생
  - 5. 위탁학생 및 공개강좌 수강생
  - 6. 각 기관장이 임용한 연구원 및 자체 직원
  - 7. 동문회원
  - 8. 일반회원
  - 9. 우대회원
- ② 휴학생이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생 자료대출 신청서(별지 제8호 서식)를 작성하여 도 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용기간은 신청일로부터 휴학 종료일까지로 한다.
- ③ 수료생이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료생 자료 대출 신청서(별지 제7호 서식)를 작성하여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용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.
- ④ 시간제 등록생 및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교육기간 중에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.
- ⑤ 수료후연구생은 등록기간 동안에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.
- ⑥ 위탁학생 및 공개강좌 수강생은 수강기간 중에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.
- ⑦ 각 기관장이 임용한 연구원 및 자체 직원은 재직 중에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.
- ⑧ 졸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본교 졸업생이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도서관회원 가입신청서(별지 제6호 서식)를 작성하여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용기간은 졸업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.
- ⑨ 졸업일로부터 3년 경과 시에는 도서관회원 가입신청서(별지 제6호 서식)와 연회비 50,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. 이용기간은 이용 신청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, 회원갱신(재가입)은 이용기간 종료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다.
- ①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시민이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도서관회원 가입신청서(별지 제6호 서식)와 연회비 100,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. 이용기간은 이용 신청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, 회원갱신(재가입)은 이용기간 종료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다.
- ① 제6조 제5호에 따른 기증(기부)자가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도서관회원 가입신청서(별지 제6호 서식)제출하여야 한다. 이용기간은 10년으로 한다.
- ② 제6조 제2호에서 4호에 따른 기증(기부)자와 본교 정년(명예)퇴직 교직원이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도서관회원 가입신청서(별지 제6호 서식)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용기간은 평생으로 한다.
- ① 제2항에서 제12항에도 불구하고, 본교 재학생 등 구성원의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장은 열람실 이용 등 도서관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.

#### 제11조의2(연회비 반환)

- ① 제11조 제9항, 제10항에 따라 납부한 연회비의 반환 사유는 다음과 같다.
  - 1. 도서관 내부사정(휴관 등)으로 6개월 이상 정상적인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
  - 2. 일반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가 부산 이외의 지역에 이사 및 취업으로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
  - 3. 질병이나 사고로 6개월 이상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
- ② 제1항 각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서관회원 해지 및 환불신청서(별지 제11호 서식)를 제출하면 다음 각 호의 반환기준에 따라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연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.
  - 1. 이용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: 연회비의 2/3 반환
  - 2. 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: 연회비의 1/2 반환
  - 3. 이용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: 반환금액 없음

## 제12조(관장의 허가를 받은 그 밖의 사람의 대출 책 수 및 기간)

- ① 규정 제18조 제2호 관장의 허가를 받은 그 밖의 사람의 대출 책 수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.
  - 1. 본교 휴학생: 3책 14일
  - 2. 본교 대학원 수료생: 10책 30일
  - 3. 시간제 등록생 및 학점은행제 학습자: 10책 14일
  - 4. 수료후연구생: 20책 30일
  - 5. 위탁학생 및 공개강좌 수강생: 3책 14일
  - 6. 각 기관장이 임용한 연구원 및 자체 직원: 10책 30일
  - 7. 동문회원: 3책 14일
  - 8. 일반회원: 3책 14일
  - 9. 우대회원: 10책 30일
- ② 제1항에 명시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전자책 대출 책 수는 5책 5일로 한다.

### 제13조(개관시간)

규정 제19조에 의한 개관시간은 [별표 1]과 같다.

## 제14조(대출 책 수 및 기간)

규정 제22조 및 운영세칙 제12조에 의한 대출 책 수 및 기간은 [별표 2]와 같다.

#### 제15조(반납연기)

대출한 자료는 반납예정일 전 2회 연기가 가능하며, 특히 연구비도서는 연구자의 요청에 의해 규정 대출 기간으로 추가 연기가 가능하다. 단. 전자책 반납연기는 1회 5일로 한다.

## 제16조(훼손 및 무단 반출)

- ① 도서관 자료 및 물품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의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  - 1. 자필 경위서 작성
  - 2. 소속 학과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
  - 3. 1회 적발 시 1개월간, 2회 이상 적발 시 1학기 동안 도서관 이용 금지
- ② 자료를 파손 및 훼손하였을 경우 도서관운영세칙 제26조에 의하여 변상 처리한다.
- ③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수리 및 재 구매를 위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.

#### 제17조(신분증 대여)

신분증을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도서관 출입, 열람 좌석 발급 및 대출을 금지한다. 이를 1회 위반 시 10일간 도서관 이용을 금지하고,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1개월간 도서관 이용을 금지한다.

### 제18조(식음 및 흡연)

- ① 음식물의 취식은 휴게실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나, 냄새나는 음식물은 반입하거나 취식 할 수 없다. 이를 위반할 시 직원은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하거나 퇴실 조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 정기간 도서관 출입을 금할 수 있다.
- ② 도서관에서 흡연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 직원은 즉시 퇴실 조치하며, 1회 적발 시 10일간 도서관 이용을 금지하고,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1개월간 도서관 이용을 금할 수 있다.

#### 제19조(게시물 부착)

게시물은 도서관의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할 수 있다.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이나, 허가 받은 경우에도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지 않거나 기한이 경과한 게시물은 철거할 수 있다.

#### 제20조(질서위반자에 대한 처분)

- ① 규정 제35조에 의한 질서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,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하거나 퇴실 조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기간 도서관 출입을 금할 수 있다.
  - 1. 정숙한 열람분위기를 해치는 행위
  - 2.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주는 행위
  - 3. 이용자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
  - 4. 자료의 보존과 활용에 위해가 되는 행위
  - 5. 그 밖에 도서관 목적에 반하는 행위
  - ② 열람실 좌석대리 발급자 또는 학생증·이용증(모바일이용증 포함) 요청자 및 대여자에 대한 처분기 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- 1. 열람실 좌석대리발급 또는 학생증·이용증 (모바일이용증 포함)대여 1회 적발 시 :

좌석배정기 이용 및 대출 중지 1개월

2. 열람실 좌석대리발급 또는 학생증·이용증 (모바일이용증 포함)대여 2회 적발 시 :

좌석배정기 이용 및 대출 중지 3개월

- 3. 열람실 좌석대리발급 또는 학생증·이용증 (모바일이용증 포함)대여 3회 적발 시 :
- 좌석배정기 이용 및 대출 중지 6개월

## 제21조(자료대출중지)

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면 연체한 기간 일수 동안 자료대출, 열람실 좌석배정시스템 및 도서관 제반 이용을 중지한다.

#### 제22조(대출 중지 면제방법)

규정 제32조에 의한 대출 중지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면제받을 수 있다.

- 1. 도서관 봉사활동 (1일 기준 2시간 봉사활동)
- 2. 도서기증 (1일 기준 1권)

## 제23조(변상처리)

규정 제33조에 의한 자료의 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동일 자료로 변상(별지 제9호 서식)

- 2. 동일자료 변상 불가할 경우(별지 제10호 서식)
  - 가. 유사주제의 자료
  - 나. 변상하여야 할 도서의 가격 이상으로 동등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자료
  - 다. 변상하여야 할 도서의 가장 최신판

## 제24조(운영지침)

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운영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## [별표 1]

## 도서관 개관시간

구분	평일		토요일		0) 0 0)		
	학기중	방학	학기중	방학	일요일		
자료실	09:00 ~ 19:00	09:00 ~ 18:00	09:00 ~ 13:00	휴관	휴관		
일반 열람실	07:00 ~ 23:00(설, 추석 당일 휴관)						
청운관 4층	청운관 4층 열람실 07:00 ~ 익일 01:00(설, 추석 당일 휴관)						
일반열람실							

<sup>※</sup> 단, 개관시간은 필요에 따라 도서관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

[별표 2]

## 대출 책수 및 기간

## 1. 단행본 대출

기. 법	단행본		CH =1
구 분 	책수	대출기간	연기
전임교원, 겸임교원, 명예교수, 강사	50책	90일	2회
직원, 조교, 대학원생, 수료후연구생	20책	30일	2회
수료생, 각 기관장이 임용한 연구원 및 자체 직원, 우대회원	10책	30일	2회
학부생, 시간제 등록생, 학점은행제 학습자	10책	14일	2회
휴학생, 위탁학생, 공개강좌 수강생, 동문회원, 일반회원	3책	14일	2회

<sup>※</sup> 교수 연구비도서의 경우 대출 책수는 제한이 없으며, 대출기간은 1년으로 정한다.

## 2. 전자책 대출

7. H	전자책		여기
	책수	대출기간	연기
전 구성원	5책	5일	1회 (5일)

# 장서 폐기 업무지침

## 제1조 (목적)

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 규정 제16조에 의거하여 도서관 자료의 보존과 활용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료의 제적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 제2조 (용어정의)

- ① "폐기"라 함은 소장 자료 중 도서관 운영세칙 제7조 제1항(자료 폐기 기준 및 범위)에 해당되는 도서 를 장서에서 공식적으로 제거하여 불용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.
- ② "제적"이라 함은 도서관 장서 폐기 업무지침 제2조 제1항에 의거하여 폐기 결정된 도서를 도서관 도서 원부에서 삭제하는 과정을 말한다.

## 제3조 (적용범위)

- ① 본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이 등록하여 관리하는 모든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적용한다.
- ② 자료의 연간 폐기율은 도서관 운영세칙 제7조 제2항(연간 전체 장서의 100분의 7)에 따른다.

## 제4조 (폐기 일반기준) 자료 폐기의 일반기준은 아래와 같다.

- ① 파·오손자료: 자료의 훼손이 심각한 자료
  - 1. 대출 중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변상 처리된 자료
  - 2. 파·오손의 상태가 심하여 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자료
  - 3. 파·오손 자료의 보수비용이 자료의 구입비를 상회하는 자료
  - 4. 절판된 자료라도 보수가 불가능한 자료
  - 5. 천재지변 그 밖에 준하는 사태로 유실 또는 손상된 자료
- ② 망실자료: 장기간 행방불명된 자료
  - 1. 3년 이상 분실 혹은 행방불명된 자료
  - 2. 대출자의 퇴직, 졸업, 제적, 사망 등 신분 변동으로 인하여 반납이 불가능한 자료
- ③ 복본 및 내용중복 자료: 동일한 도서나 비슷한 내용을 수록한 자료
  - 1. 보존에 필요한 부수 이외의 복본
  - 2. 원본이 있는 자료의 복사본이나 값싼 영인본
- ④ 이용 가치를 상실한 자료: 연구 및 이용 가치를 상실한 자료
  - 1. 내용 개정, 법령집, 기술개발 등 사회변화에 따라 이용 가치를 상실한 자료
  - 2. 10년 동안 대출이 발생하지 않은 이용률이 현저히 저하된 자료
  - 3. 오류로 판명된 학설이나 이론을 담고 있는 자료
  - 4. 오락성, 대중성 등에 중점을 둔 대학도서관 자료로 소장 가치가 낮은 자료
- ⑤ 대체 가능한 자료: 형태상 대체가 가능한 자료(DB, 전자도서 등)
  - 1. 신문의 축쇄판, 백서의 시판본, 잡지의 영인본 등과 같이 형태상 대체가 가능한 자료
  - 2. 연속적으로 간행된 자료로 누적 판이 출판된 자료
  - 3.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원문 이용이 가능한 자료
  - 4. 이용 빈도가 극히 낮고 타 기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

## 제5조 (유형별 기준) 자료 폐기의 유형별 기준은 아래와 같다.

- ① 단행본
  - 1. 복본 및 중복자료
  - 2. 대학의 학과, 전공, 커리큘럼 등과 연관성이 없는 자료
  - 3. 자료의 최신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자료
  - 4. 상호대차를 통해 이용 가능한 자료
- ② 참고도서
  - 1. 백과사전, 사전, 편람, 연감 등 개정판, 증보판이 출간되어 이용 가치가 없는 자료
  - 2. 인명록, 주소록, 요람, 통계 등의 자료로 최신성이 없는 자료
  - 3. 전자정보원으로 제공되는 자료
- ③ 연속간행물
  - 1. 전자저널 등 온라인 방식으로 대체 가능한 자료

- 2. 일간, 주간, 월간 등 각종 유관기관에서 발행하는 신문자료
- 3. 각종 기관단체에서 발간하는 홍보지, 사보 등 자료
- 4. 타 대학에서 발간된 연구논문집 등 자료
- ④ 비도서자료
  - 1. CD·DVD 등 자료
    - 가. 손상, 파손으로 인해 작동 불가능한 자료
    - 나. 갱신 전 구버전 자료
    - 다. 웹 DB로 전환된 자료
  - 2. 시청각자료
    - 가. 소장 가치를 상실한 시청각자료
    - 나. 손상,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음질이 불량한 시청각자료
    - 다. 재생 매체의 부재로 활용이 불가능한 카세트테이프 및 비디오테이프
- ⑤ 학위논문
  - 1. 도서관 DB에 원문 구축이 되어 있는 본교 학위논문
  - 2. 타 기관 DB에 원문 구축이 되어 있는 타 대학 학위논문

## 제6조 (주제별 기준) 자료 폐기의 주제별 기준은 아래와 같다.

- ① 공통
  - 1. 출판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자료 중 이용 빈도가 격감(10년간 무대출)하여 가치를 상실한 자료
  - 2. 출판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공무원 수험서, 각종 자격증, 여행안내서 등 자료
  - 3. 저작권 위반 등으로 인하여 도서관 자료실 배치 불가를 권고받은 자료
- ② 인문학 분야
  - 1. 확실한 근거도 없이 특정 종료. 인물. 이론 등을 비방하는 자료
  - 2. 시대에 맞지 않는 가치관 또는 윤리관을 강조하는 자료
  - 3. 내용이 지나치게 외설적이거나 선정적으로 묘사된 자료
  - 4. 문학적 가치보다는 일시적인 수요에 의해 구입한 베스트셀러(만화, 판타지소설 등)
  - 5. 내용이 변하지 않는 소설·시 등 고전문학류의 구버전 자료
- ③ 사회과학 분야
  - 1. 개정된 법령자료의 구판
  - 2. 일반화되지 않은 특정 학파나 학설을 지지하는 자료
- ④ 순수과학 분야
  - 1. 과학적 조사 탐험, 채집, 관찰 등에 관한 자료임에도, 학술적 가치가 미미한 자료
  - 2. 사용되지 않는 각종 실험실의 시설과 조작법을 다룬 자료
- ⑤ 응용과학 분야
  - 1. 임상 실험 결과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어 연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료
  - 2. 발명, 특허, 표준 등의 자료로 발전단계가 경과됨에 따라 현재는 효용가치가 떨어진 자료
  - 3. 실험기기나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 등이 정확하게 제시되지 못한 자료
  - 4. 과학기술에 관한 최신성을 상실한 자료
  - 5. 컴퓨터 등 기술 발달로 인하여 더 이상 활용되지 않는 기기나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
- ⑥ 예체능 분야
  - 1. 그림 및 사진의 인쇄기법, 색조 등이 품질이 낮아서 소장 가치가 없는 자료
  - 2. 예술성이 결여된 외설적, 선정적인 자료
  - 3. 삽도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취미, 오락 등에 관한 자료
  - 4. 경기에 관한 규칙이나 기술이 개정되어 이용 가치를 상실한 자료

#### 제7조 (폐기 제외 기준) 자료 폐기 제외 기준은 아래와 같다.

- ① 타 도서관에서 찾기 힘들며, 소장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자료(희귀본, 고서, 귀중본 등)
- ② 연구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 중 우리 대학도서관만 소장한 유일본
- ③ 도서관장이 보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외하는 자료
- ④ 1~3항에 해당되는 도서를 파·오손, 망실 등의 사유로 폐기할 수 밖에 없을 시에는 운영세칙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

#### 제8조 (폐기 절차) 자료 폐기 절차는 아래와 같다.

- ① 계획 수립
  - 1. 시기
    - 가. 매년 1회 실시한다.
    - 나.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.
  - 2. 실무위원회
    - 가. 폐기 대상 자료 선정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.
    - 나. 실무위원회는 자료(단행본, 연속간행물) 운영, 수서, 정리, 전산 담당자를 포함한다.
- ② 폐기 대상 선정
  - 1. 도서관 선정 기준 및 선정 제외 기준에 의거하여 폐기자료를 선정한다.
  - 2. 선정된 자료 목록을 작성하고 그 사유를 기재한다.
  - 3. 운영세칙 제7조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하여 폐기하는 자료는 관련 문서를 첨부한다.
- ③ 심의
  - 1. 관장은 선정된 폐기 대상 자료의 심의를 도서관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진행한다.
  - 2. 심의 결과 반영
    - 가.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폐기 대상 자료를 확정한다.
    - 나.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요청이 있는 자료는 폐기를 유보한다. 재심의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심의를 완료한다.
- ④ 내부 결재 및 승인
  - 1. 심의가 완료된 폐기자료 리스트는 도서관장 결재로 최종 승인한다.
- ⑤ 폐기 처리
  - 1. 폐기대상 자료는 책 표지(장서인 우측 변)에 '제적'을 날인한다. 단, 제적 자료를 완전 파기할 경우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.
  - 2. 폐기 처리 자료에 대한 폐기 원부를 작성하여 전자결재 후 영구 보관한다.
  - 3. 도서관리시스템의 해당 자료 상태를 '제적'으로 처리한다.
  - 4. 각종 장서 통계에 이를 반영한다.

## 제9조 (폐기 방법) 자료 폐기 방법은 아래와 같다.

- ① 폐기자료 중 교내 및 타 기관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자료는 그 기관으로 기증할 수 있다.
- ② 폐기자료는 매각하거나, 매각할 수 없는 자료는 분쇄 또는 소각한다.
- ③ 매각처리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, 본교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.

#### 제10조 (재등록) 자료의 재등록은 아래와 같이 한다.

- ① 분실,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료가 발견 또는 회수되었을 경우에는 폐기 기준에 따라 보존 가치 여부를 판단하여 재등록 또는 폐기 처리한다.
- ② 폐기 및 제적된 자료의 등록번호는 도서원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사용하지 아니하며, 회수된 도서 재등록 시 신규 번호를 부여한다.